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111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최재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정인균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2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7가단22648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2.자 매매계약,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3.자 매매계약,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31.자 매매계약을 142,558,521원의 한도 내에서1)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558,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6,000만 원원의”를 “6,000만 원의”로, 제3쪽 제5행의 “② 2억 3,000”을 “② 피고에 대한 2억 3,000”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자의 의사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에 대한 회복을 명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1. 5.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물반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1) 원고의 채권액 142,558,521원으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 청구의 취지상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에는 ‘142,558,521원의 한도 내에서’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설행한다.